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3190

제출연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가 가속화되어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우리시 현 상황에 부합하는 시민의 문화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제1조)
나. 조례의 기본이념(제2조)
다. 조례의 정의(제3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4조)
마. 시장의 책무(제5조)
바. 시민의 문화권 보장(제6조)
사. 문화자치 기반 마련 및 문화예술의 육성 등(제7조~제10조)
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제11조)
자.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제12조~제19조)

3. 제정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입법예고

가. 예고 기간: 2025. 9. 25.~2025. 10. 15.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덧붙임

- 하남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10. 관련부서: 해당 없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하남시민의 권리와 하남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 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리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 주체 간 협력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하남시 문화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6조(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나이,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시민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 주체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권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 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 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 및 각 동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문화 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시장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 · 발전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14. 국제문화 교류 ·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 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장 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

제12조(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 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문화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와 임직원

다. 시 문화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용역·연구·대행·감정 또는 증언·진술·감사·수사·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 장소 ·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문화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문화정책과장 최 현 숙
	팀장 직위 · 성명	문화정책팀장 김 정 아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박 주 언 (031-5182-1289)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관련조문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경제문화국 문화정책과장(최현숙)

관계법령 발췌서

1 「문화기본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36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 · 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0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12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여

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용역·연구·대행·감정 또는 증언·진술·감사·수사·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사항

현재 하남시는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참가

1.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참여 지자체 [9개]

연번	구분	지자체	사업명	결정액 (천원)
합계				240,000
1	4년차	이천시	2025년 이천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25,000
2		양주시	사람 중심 문화도시 양주 조성	30,000
3	3년차	포천시	2025 포문(抱文·抱問 ·砲門) 2.0 - 이루어질지도	35,000
4		화성시	예술로 소통하고 생활 속에 녹아드는 지역문화	20,000
5		김포시	김포, 문화자치로(路) 물들다	35,000
6	1년차 (신규)	안산시	문화로 같이, 문화로 자치!	30,000
7		구리시	구리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30,000
8		광주시	광주시 문화밥상	20,000
9		하남시	하남시 문화자치 정미소(情微笑)	15,000

조례 제정(문화자치) 지자체: 이천시, 양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산시 [5개]

2. 하남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 경기도 공고 제2025-702호(2025.3.18.)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

○ 하남시 문화정책과-12772(2025.5.7.)호 [2025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안내]

□ 추진개요

○ 사업명: 하남시 문화자치 정미소(精微笑)

- 시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 활동을 빚어내는 시민 문화 플랫폼

○ 추진근거

- 문화기본법 제8조 제7항 및 12항,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7조

○ 사업기간: 2025.4. ~ 2025.12.

○ 사업성격: 문화자치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역량강화 등 지원

○ 주최주관: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 사업예산: 30,000천원(도비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3.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필요성

하남시는 ‘정미소’ 등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이 요구됨.